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023

발의연월일: 2021. 3. 23.

발 의 자:김민철·김경협·김철민

김홍걸 • 민형배 • 민홍철

서영교 · 어기구 · 오영환

이용호 · 임오경 · 장철민

한병도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은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,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올해 2021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.

그런데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는 1986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농산물 생산기반 유지 및 안정적 공급을 통한 농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여 왔으며,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등 사업구조개편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바,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임.

이에 농업·임업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(부가가치세, 개별소비세, 교통·에너지·환경세, 교육세, 자동차세) 면제제도 및 농협중앙회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 등 올해 2021년 말로

도래하는 일몰기한을 각각 4년씩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06조의2제1항 및 제121조의23제10항).

주요내용

- 가. 농어민의 영농·영어 비용 경감을 위해 농·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하는 '농업용 유류 면세제도'의 일몰기한을 20 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06조의2 제1항).
- 나.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함(안 제121조의23제10항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 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제121조의23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2021년 12월 31일"을 "2025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개 했 정 아 제106조의2(농업·임업·어업용 제106조의2(농업 · 임업 ·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등) ① -----나에 해당하는 석유류(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| 에 따른 석유제품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면세유"라 한다)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 출되는 것에 대한 개별소비세. 교통 · 에너지 · 환경세,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 세(이하 이 조에서 "자동차세" 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면제한다. 이 경 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 -----2025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하 고, 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 까지 공급하는 것에만 적용한 다. 1. ~ 2. (생 략) 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② (생 략) ② ~ ② (현행과 같음)

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	제121조의23(농업협동조합중앙회
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	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)
① ~ ⑨ (생 략)	① ~ ⑨ (현행과 같음)
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(10)
해당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는	
<u>2021년 12월 31일</u> 까지 부가가	2025년 12월 31일
치세를 면제한다.	
1. ~ 2. (생 략)	1. ~ 2. (현행과 같음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